#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9 발의연월일: 2024. 10. 22.

발 의 자:조 국·박은정·차규근

이해민 • 황운하 • 김재원

김선민 · 김준형 · 신장식

정춘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0 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4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 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제70조(벌칙) 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u>5천만원</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	②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u>7</u>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천만원
<u>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u>피해</u>	③ <u>고소</u>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u>있다</u> .